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04
----------	-----

2023년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3. 5.30.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3. 6. 1.
4.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3. 6.2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23. 6.3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 의안번호 제90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동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904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2023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2년도 결산 반영 결과 예치금이 증액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

○ 2023년 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

정책/세부사업	당초(A)*	변경(B)	증감(B-A) (증감률)
합 계	372,648	426,999	54,351
중소기업 금융지원	304,216	304,216	-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102,800	102,800	-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279	279	-
기금업무대행수수료	1,137	1,137	-
재무활동	68,427	122,778	54,351 (79.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상환	10,000	10,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이차상환	2,640	2,640	-
예치금	55,787	110,138	54,351
행정운영경비	5	5	-
기금관리비	5	5	-

* 당초 지출계획액은 제315회 정례회 의결('22.12월)을 받은 금액임

○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A-B)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A-B)	
합 계	372,648	426,999	54,351	합 계	372,648	426,999	54,351	
기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257,762	257,762	-	사업비	기금 용자금	200,000	200,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2,770	2,770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금	102,800	102,800	-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79	279	-
예치금 회수	70,767	125,107	54,340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1,137	1,137	-
기타(일반)회계 전입금	41,349	41,349	-	재무활동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10,000	10,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차 상환	2,640	2,640	-
예치금	55,787	110,138	54,351					
기타수입	-	11	11	기본경비	5	5	-	

3.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543억 4,000만원)와 기타수입(1,100만원)에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여유자금 예치(543억 5,100만원)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¹⁾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²⁾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수입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79.4%, 543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296

〈표 3-1〉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당 초 (A)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 출 합 계	372,648	426,999	54,351	14.5
중 소 기 업 금 용 지 원	304,216	304,216	-	-
일 반 예 산 (재 무 활 동)	68,427	122,778	54,351	79.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리금 예수금 및 이자 상환	12,640	12,640	-	-
여 유 자 금 예 치	55,787	110,138	54,351	97.4
행 정 운 영 경 비	5	5	-	-

※ 자료근거 :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지출계획,
②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23. 5.30) 재구성

○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³⁾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용자금 회수
 4.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23. 6.27.(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11명)
 - 위 원 장 : 이성배(주택공간)
 - 부위원장 : 강동길(주택공간), 김영옥(보건복지)
 - 위 원 : 송경택(행정자치), 김지향(기획경제),
이영실(환경수자원), 이종배(문화체육관광),
박철성(도시안전건설), 김영철(도시계획균형),
김용일(도시계획균형), 경기문(교통)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3. 6.29.(목) 14:00 ~ 16: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3. 6.30.(금) 12:00 ~ 13: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

VII. 부대의결 : 「생략」

VIII. 심사결과 : 원안가결(2023. 6.30.)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904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2년도 결산 반영 결과 예치금이 증액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

○ 2023년 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세부사업	당초(A)*	변경(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372,648	426,999	54,351
중소기업 금융지원	304,216	304,216	-
중소기업직접용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102,800	102,800	-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279	279	-
기금업무대행수수료	1,137	1,137	-
재무활동	68,427	122,778	54,351 (79.4%)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상환	10,000	10,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이자상환	2,640	2,640	-
예치금	55,787	110,138	54,351
행정운영경비	5	5	-
기금관리비	5	5	-

* 당초 지출계획액은 제315회 정례회 의결('22.12월)을 받은 금액임

○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A-B)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A-B)	
합 계	372,648	426,999	54,351	합 계	372,648	426,999	54,351	
기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257,762	257,762	-	사업비	기금 용자금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자보전금	102,800	102,8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2,770	2,770	-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79	279	-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1,137	1,137	-
예치금 회수	70,767	125,107	54,340	재무활동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10,000	10,000	-
기타(일반)회계 전입금	41,349	41,34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2,640	2,640	-
					예치금	55,787	110,138	54,351
기타수입	-	11	11	기본경비	5	5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오승백 (☎ 2133-5190)